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3. 1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6년 3월 11일 (수) 14:00~16:47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김　중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62호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63호 **『OOOO㈜,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처음에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회사 단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관여가 없고 그냥 속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이것이 시세조종은 아니지만 자기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이례적인 사례(case)이다 보니까 이사들이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했나, 약간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음.

○ (보고자)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요청에 따라서 임시주총이 열리고, 감사가 해임될 정도로 지배력 부분에서 취약함

○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사들이 압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해서 배임성 행위를 한 것 아닌지? 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증권업자가 고가의 주문을 왕창 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인데 그것이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약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 (보고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주식매수주문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취득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대량의 허수성 저가주문을 신탁에서 내 주면 체결 안 되게 자기가 주가를 조정해서 올려 놓겠다는 대화내용도 확인이 됨.

○ (위원) 요즘 상법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활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pick up) 있는지?

○ (보고자) 일단,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시세조종이나 주가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취득계획을 공시하게 하고 계약체결 사실도 공시하게 하고 그다음에 취득금액, 매수주문금액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음. 일정한 경계(boundary) 내에서만 주문이 나가도록 하고, 자기주식 취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 실제로 이번 건의 한 분이 ΘΘΘΘ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냥 정상적인 자사주 매입을 요구한다, 그전에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이 다 법위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지? 물론 가격이 비합리적이기는 했지만, 그러다보니까 위계 부분이 뭔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함.

○ (보고자) 정보들이 시장투자자들과 회사경영진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도록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전부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숨겨진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숨기고 어떤 요구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개별 법령위반으로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부정거래나 좀 더 중대한 범죄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나 결합상태 그리고 위반동기와 행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4호『OOOO㈜ OO OOOOO OO OOO OO OOOO OO OO OOO』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5호『**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국내 기관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 (보고자) 아무래도 결제가 늦어지니까 자금흐름이 국내 기관들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빨리 끝내고 싶은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외국인들의 미결제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 중임. 결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미리 대처를 하거나 조달해서 결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조치를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6호**『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7호**『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8호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어떤 말로도 임직원 자기매매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처했던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 저는 업무만 18년 이상 해 오다가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영업직군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부담이 컸음. 실적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까지 있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안일한 생각으로 임직원 거래 계좌 신고를 간과하게 되었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되었던 일이 어느 순간 정리를 할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손실이 커져 있었음. 금액과 상관없이 임직원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리를 결심하였고 자체 감사를 거짓과 변명 없이 성실히 임했으며,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즉시 정리하였음. 결단코 규제회피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림. 자본시장법 및

내부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 증권업 종사자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음. 앞으로는 법규 및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향후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함. 저는 이미 2024년도에 감봉 등의 징계 조치로 2025년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음. 부디, 저의 상황을 참작하시어 최대한의 감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

▶ (진술인) 먼저, 금융인으로써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규를 준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안일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림. 저는 오늘 제 잘못을 변명하기보다 지난 20년간 지켜온 금융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제 과오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간절한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함. 본건 위반사실은 소속 회사에서 실시한 자체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되었음. 저는 회사가 계좌 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직접 매매한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음. 그 이후 내부 감사부터 금융감독원의 서면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투명하게 제출하여 조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음. 만약 제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IT전문가로서 거래내역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고자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밝혔음. 이러한 저의 자발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협조 과정을 부디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 이번 매매는 가계 자산을 관리하던 중 배우자가 주문에

어려움을 느껴 제가 대신 도와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장질서를 해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살펴주시기 바람.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월 정직1개월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음. 여기에 더해진 최고액 2,500만 원의 과태료는 평범한 직장인인 저와 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너무나 큰 금액임. 이미 충분한 내부처벌을 받은 점을 너그럽게 고려하시어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 드림. 남은 직장생활은 내부통제 전도사가 되어 다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후배들이 없도록 앞장을 서겠음. 지난 20년간의 성실함과 저의 진심 어린 참회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금융인으로서 기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음.

▶ (진술인) 한 가지 말씀 간곡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적 제재이지만 두 분 다 감봉과 정직이라는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 제재가 내려진 사실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전에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도 통상 이러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은 충분히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최고금액까지 가게 된 이유가 워낙 거래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다 보니까 신고하여야 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9호『㈜**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대여기간 보면 20xx년 xx월xx일에 원금상환을 하고 20xx년 xx월xx일에 이자상환을 했으면 2년 뒤에 이자를 더 지급한 것인지?

○ (보고자) 저희가 감독국으로부터 정보사항을 입수 받아서 수시검사를 한 것이 2025년 4월임. 이때 저희가 검사과정에서 보니까 이자를 안 받았음. 그래서 왜 이자를 안 받았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자를 받게 된 건(case)임.

○ (위원) OOO의 지분율은 O% 인 것인지?

○ (보고자) O%임.

○ (위원) ㈜OOOOOOOO에 O%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분이 지금 대략 1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임원대여금으로 받아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관계사에 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빌려준 대여금으로부터 이런 임금이 지급됐다면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것은 자본시장법상 본인 연봉 내에서 회사가 대여해 줄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음.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가 20xx년 xx월xx일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OOOO에서 자문형 랩 제안이 있는데 투자자문업 등록과정에서 저희가 관계사 급여와 세금 관계 때문에, 제가 근무를 했던 회사였음. 그래서 O만 원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연봉 내에서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왔음. 그런데 지금 과징금에 대한 처분은 너무 과한 것이고, 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임. 자본시장법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년 동안 신규 사업도 못했고 사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법이 맞아서 저희가 과징금을 정말 부여받아야 된다면 받겠지만 이것은 법의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다음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림.

○ (위원) 이 법제도의 취지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관계사에게 신용공여를 하면 금융기관 부실화가 당연히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신지?

▶ (진술인) 그것은 다 이해함.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자산 건전성에 O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 회사에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연봉 내에서 회사에서 대여금을 받아서 그 회사를 빌려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도 됐었을 텐데 그냥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법에 대한 것도, 제가 물론 준법 관련한 부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서 이해를 못한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당연히 그럴 수 있음. 결과는 똑같은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의 부당성을 말씀드림.

○ (위원) 제도의 취지를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임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임직원들의 생계보조나 그런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도 알고 계시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연봉 내에서 할 때는 문제없다고 금감원에서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 (진술인)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사업 초기에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는 이런 공문이 하나 왔었음.

거기에 그런 취지의 내용, 그리고 1억 원 미만 또는 연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제 스스로 그 정도로 이해를 했음.

○ (위원) 20xx년 xx월에 설립하기 전에는 대표님 무엇을 하셨는지?

▶ (진술인) 지금 대여금을 줬던 관계사인 ㈜OOOOOOOO의 대표를 했음. 컨설팅 회사임.

○ (위원) 무엇을 컨설팅 하는 곳인지?

▶ (진술인) 기업에 대한 부분과 자산가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했음.

○ (위원) 기업과 자산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컨설팅 하셨는지?

▶ (진술인) 분석과 세금 관련한 것 그리고 투자 관련한 부분들을,

○ (위원) 투자, 세금 그런 것이면 관련법규 같은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OOOOOOOO라는 곳이 무인가 투자자문업을 한 것 아닌지?

○ (보고자) 시장조사업체로 금융 이런 자문업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0호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5시5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71호 **『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본 안건은 동 검사 지적사항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26.8.24.)을 고려하여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건임. 잔여 지적사항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림.

○ (보고자) 이 건 검사 지적사항이 총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먼저 분리처리를 해서 아직 직무관련정보 이용금지 위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의미임.

○ (위원) 그런데 이 제척기간이 8월이면 상대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지?

○ (보고자) 8월이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같이 올릴까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척기간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한 가지 위반사항이 언제 처리될지 하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었음.

○ (위원)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 (보고자) 지금 직무정보이용 남아있는 잔여 지적사항 조치대상자와 금번 증선위에 상정한 OOO 조치대상자와 대상자는 다름. 지금 남아있는 직무정보이용에 대해서는 아이앤제이자산운용㈜의 OOOO OOO이 펀드의 2종수익의 투자자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한 사건에 대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아직 남아 있음.

○ (위원) 가급적이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위반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같이 처리를 해야 규제형평성이라든가, 과거의 제재 수준 그런 것과 맞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잔여쟁점이 있는 사안이 특별하게 어떤 법률쟁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면 그것은 금융위 소관 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법령해석을 받든지 아니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2호 『**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회사는 PF사업의 도관체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볼 때 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사채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인지?

○ (보고자) 권리의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3호『㈜**엑시온그룹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동기와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상'·'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음.

○ (보고자)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상'이 되는 것은 공시위반 대상자산의 842%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을 적용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4호『㈜**유림테크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후속적 위반행위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2023년 5월에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러면 2023년 5월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만 위반된 상황이라면 이후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면제(Waive)해 주는 이 자체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 (보고자) 말씀하신 사항 고민해 보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5호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본 건은 자조심에서 수정심의된 사안임. 현 규정상 하향조정사유에 자진신고와 과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통상 하나만 적용되어 왔음. 그런데 본 건은 2가지 사유 모두가 발생함. 한편, 자진신고가 없었으면 본건 적발 가능성이 낮음.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진

신고를 독려하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자조심에서 검토되었고, 자조심에서는 이에 동의하여 작량감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제75호 안건은 복수의 하향 조정사유가 존재하나 현 기준 상 중복하향이 불가한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의 자진신고에 대한 조정 비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원안 대비 50% 작량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보고안건 제6호 **『2025년도 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